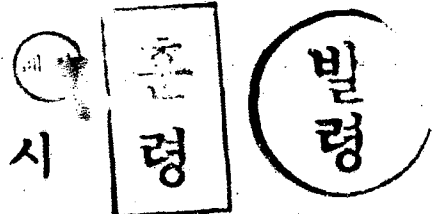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투 11180-201

시행일자 1993. 7. 19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	시	장
보존	준영구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	
법무 담당관				
법제계장				
기안	김숙자		협조	

제목 훈령발령

1. 녹지11060-1006(93.7.1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규정폐지규정을 별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관 (공보1담당관)

제목 시보게재

서울특별시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

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녹지과장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녹지11060-1006(93.7.14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(생략). 끝.

법무담당관

서울특별시 산림법외안과태도부 규정수규정매지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3 년 7 월 26 일

서울특별시장 9

인

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규정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